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가단2441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전수려

피고A

변론 종결2023. 9. 8.

판결 선고2023. 9. 2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22. 4. 15. 접수 제75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2021. 9. 24. 소외 B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9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21. 9. 24.부터 2026. 9. 23.까지로 하는 2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2개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B는 2021. 9. 24.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각 2,000만 원씩 2건의 대출을 받게 되었다.

나. 이후 C은행은 2022. 5. 23. B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6. 24. C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9,107,326원과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9,107,326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B는 2022. 4. 15.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7545호로 2022. 4. 1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2. 6. 24. 기준으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권보전비용 등의 합계는 37,494,180원(=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잔액 18,408,966원 +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잔액 18,879,326원 + 확정손해금 202원 + 대지급금 잔액 205,68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414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위 대법원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2. 6. 24. 발생하였으나 그 성립이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2021. 9. 24.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직후인 2022. 4. 25. B는 운영하던 업체의 폐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B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와의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주혜

별지